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주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54 발의연월일: 2020. 6. 15.

발 의 자: 박주민·백혜련·우원식

최강욱 • 고영인 • 이탄희

양이원영 · 윤관석 · 민홍철

양정숙 · 용혜인 · 김경만

권인숙 · 이인영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는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도입된 것으로,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도울 수 있는 기반으로 자리매김하였음.

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개인파산으로 인한 면책허가를 받은 채무자라 할지라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고, 해당기간동안 이자가 계속 가산되어, 경제적 어려움을 딛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청년에게 여전히 큰 부담이 되고 있음. 국가가 청년을 대상으로 면책되지 않는 채권을 확보하는 것은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·경제적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「청년

기본법」의 기본이념에도 반한다고 할 것임.

또한, 최근 대학원 진학률이 높아지고, 대학원생도 청년으로서 학업을 위해 많은 희생이 뒤따르고 있음에도, 대학원생에 대해서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여, 대학원생은 재학 중에지속적으로 이자 및 상환에 대한 압박을 받아야 함.

이에,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, 개인파산으로 면책허가를 받은 채무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삭제하면서, 기존에 면책허가를 받고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도 상환 책임이 면제되도록 규정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재기를 도우려는 것임(안 제3조제4호 및 제36조제4항 삭제).

법률 제 호
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4호 중 "외국인 및 대학원생"을 "외국인"으로 한다. 제36조제4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책임 면제에 관한 적용례) 제3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면책허가를 받았으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도 적용한다.

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66조제9호를 삭제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3조(정의)
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"대학생"이란 고등교육기관	4
에 재학(입학 또는 복학 예정	
인 경우를 포함한다)하고 있	
는 학생(<u>외국인 및 대학원생</u>	<u>외국인</u>
은 제외한다)을 말한다.	
5. ~ 13. (생 략)	5. ~ 13. (현행과 같음)
제36조(소멸시효 등) ① ~ ③	제36조(소멸시효 등) ① ~ ③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④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	<u><삭 제></u>
관한 법률」 제564조의 면책허	
<u>가를 받은 채무자의 경우에도</u>	
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	
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	
면제되지 아니한다.	